

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업무협약서 개정대비표

(구매기업용-협력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이 있는 방식 및 장래채권 양도방식용)

1. 주요 개정 내용

현 행	개 정	비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업무협약서 (구매기업용-협력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 및 포괄 승낙방식용)</p> <p>주식회사 하나은행 앞</p> <p>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합)과 _____(이하 “구매기업”이라 하고, “은행”과 합쳐 “양 당사자”라 합니다)은 상호협력하여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은행의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」 결제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(이하 “이 협약”이라 합니다)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,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 및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.</p> <p>제 1 조 (목적) (기재생략)</p> <p>제 2 조 (협력기업의 정의) 이 협약에서 협력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(용역 포함, 이하 같습니다)을 납품하는 거래기업 중 은행으로부터 이 협약과 관련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담보조로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외상매출채권(이하 “외상매출채권”이라 함)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은행과 체결한 기업과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 없이 채권대금을 만기수령하기 위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업무협약서 (구매기업용-협력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 및 장래채권 양도방식용)</p> <p>(삭제)</p> <p>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합니다)과 _____(이하 “구매기업”이라 하고, “은행”과 합쳐 “양 당사자”라 합니다)은 상호협력하여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은행의 「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」 결제제도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(이하 “이 협약”이라 합니다)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,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 및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과 금융결제원의 「B2B 업무규약」 및 「동시행세칙」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.</p> <p>제 1 조 (목적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2 조 (협력기업의 정의) 이 협약에서 협력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(용역 포함, 이하 같습니다)을 납품하는 거래기업 중 은행으로부터 이 협약과 관련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담보조로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외상매출채권(이하 “외상매출채권”이라 함)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관련 대출약정을 은행과 체결한 기업과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만기수령하기 위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.</p>	<p>용어 수정</p> <p>용어수정 및 준용 약관 추가</p> <p>문구 수정</p>

제 3 조 (업무의 방법)

- ① (기재생략)
- ② 협력기업은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, 외상매출채권의 **지급기일** 전에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(with recourse)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(이하 "전자외담대"라 합니다)을 받거나 하위 협력기업에 대한 구매자금 결제를 목적으로 상생벤더구매론의 지급승인(이하 상생벤더구매론의 개별대출이 실행된 경우 및 지급승인으로 은행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"상생벤더구매론"이라 합니다)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외상매출채권의 양도 없이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은행의 지급대행을 통하여 만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.
- ③ 은행은 전자외담대 및 상생벤더구매론이 실행된 경우에 외상매출채권의 **결제일**에 결제대금으로 전자외담대 및 상생벤더구매론을 상환처리하며, 구매기업이 결제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경우 구매기업은 은행에 대하여 결제대금의 변제 의무를, 협력기업은 은행에 대하여 전자외담대 및 상생벤더구매론의 변제 의무를 부담합니다.

제 4 조 (기본 협약사항)

- ① (기재생략)
- ② **(외상매출채권의 양도)**
은행이 협력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, 은행은 협력기업으로 하여금 그 양도사실을 지체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하도록 하거나, 협력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합니다. 이에 대해 구매기업은 제 4 항에 명시된 사유 등이 없는 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.

(신설)

- ③ (장래채권이 매 건별로 확정되었을 경우의 통보)
1.~2. (기재생략)

제 3 조 (업무의 방법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협력기업은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, 외상매출채권의 **만기일** 전에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(with recourse)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(이하 "전자외담대"라 합니다)을 받거나 하위 협력기업에 대한 구매자금 결제를 목적으로 상생벤더구매론의 지급승인(이하 상생벤더구매론의 개별대출이 실행된 경우 및 지급승인으로 은행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"상생벤더구매론"이라 합니다)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외상매출채권의 양도 없이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은행의 지급대행을 통하여 만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.
- ③ 은행은 전자외담대 및 상생벤더구매론이 실행된 경우에 외상매출채권의 **만기일**에 결제대금으로 전자외담대 및 상생벤더구매론을 상환처리하며, 구매기업이 결제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경우 구매기업은 은행에 대하여 결제대금의 변제 의무를, 협력기업은 은행에 대하여 전자외담대 및 상생벤더구매론의 변제 의무를 부담합니다.

제 4 조 (기본 협약사항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**(외상매출채권의 양도 및 양도승낙)**
1. 은행이 협력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, 은행은 협력기업으로 하여금 그 양도사실을 지체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하도록 하거나, 협력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합니다. 이에 대해 구매기업은 제 4 항에 명시된 사유 등이 없는 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.

2. **구매기업과 협력기업 사이에 체결한 물품 납품 계약 등에서 협력기업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에도 불구하고, 구매기업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이용과 관련하여 협력기업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은행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.**

- ③ (장래채권이 매 건별로 확정되었을 경우의 통보)
1.~2. (현행과 같음)

용어 수정

용어 수정

용어 수정
호 번호 신설

법무법인 검토
의견 반영을 위
한 호 신설

<p>3.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은 발행일(통보일)로부터 180 일 이내에서 정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④ (기재생략)</p> <p>1. 구매기업이, 협력기업이 당시까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 <p>2.~3. (기재생략)</p> <p>4. 협력기업의 채권자로부터 압류, 가압류가 있거나 협력기업이 제 3 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한 경우</p> <p>5.~6. (기재생략)</p> <p>⑤ (전자외담대의 취급 및 제한)</p> <p>은행은 제3항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협력기업별 통보금액 범위 내에서 협력기업에게 전자외담대를 취급할 수 있기로 합니다. 그러나 동 협력기업이 「신용정보관리규약」상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거나 기타 은행의 내규 상 여신의 비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전산상 장애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은행은 즉시 그 사실을 구매기업과 협력기업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⑥ (기재생략)</p> <p>⑦ (양도받은 채권의 관리 및 통지)</p> <p>구매기업은 은행이 양도받은 외상매출채권을 성실히 관리하여 은행의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금 채권보전에 적극 협조하고, 협력기업의 채권자가 위 외상매출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다거나 협력기업으로부터 제 3 자에게 위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은행이 협력기업으로부터 양도받은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⑧ (외상매출채권의 지급)</p> <p>1. 구매기업은 제 3 항에 따라 은행에게 전산으로 통보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그 명세에 기재된 지급기일에 은행의 영업시간 이내에 아래와 같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그 명세에 기재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입금하기로 합니다.</p> <p>(하나은행에 개설한 본인명의를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.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8 1390 1003 1474"> <tr> <td>예금주</td> <td>예금주 사업자번호</td> <td>계좌번호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예금주	예금주 사업자번호	계좌번호				<p>3.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은 발행일(통보일)로부터 180 일 이내에서 정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협력기업이 당시까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 <p>2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협력기업의 채권자로부터 (가)압류가 있거나 협력기업이 제 3 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한 경우</p> <p>5.~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전자외담대의 취급 및 제한)</p> <p>은행은 제3항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협력기업별 통보금액 범위 내에서 협력기업에게 전자외담대를 취급할 수 있기로 합니다. 다만 동 협력기업이 「신용정보관리규약」상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거나 기타 은행의 내규 상 여신의 비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전산상 장애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은행은 즉시 그 사실을 구매기업과 협력기업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(양도받은 채권의 관리 및 통지)</p> <p>구매기업은 은행이 양도받은 외상매출채권을 성실히 관리하여 은행의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금 채권보전에 적극 협조하고, 협력기업의 채권자가 위 외상매출채권을 (가)압류하였거나 협력기업으로부터 제 3 자에게 위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은행이 협력기업으로부터 양도받은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⑧ (외상매출채권의 지급)</p> <p>1. 구매기업이 이 협약에 따라 은행에게 통보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구매기업 및 협력기업 간의 법률관계와 무관하게,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의 변제의무를 부담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며, 그 명세에 기재된 만기일에 은행의 영업시간 이내에 아래와 같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그 명세에 기재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입금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.</p> <p>[하나은행에 개설한 본인명의를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.]</p>	<p>용어 수정</p> <p>용어 삭제</p> <p>용어 수정</p> <p>용어 수정</p> <p>문구 수정</p> <p>법무법인 검토 의견 반영한 문구 수정</p>
예금주	예금주 사업자번호	계좌번호						

	예금주	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	계좌번호	용어 수정
<p>2. 만기도래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은 별도의 청구서 없이 인출하여 전자외담대 및 상생벤더구매론 취급분을 우선 변제하고, 미취급 분은 접수일자 순,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.</p> <p>3.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, 부득이한 사유로 통장예금자동대출 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, 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취급 및 이자징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.</p> <p>4. 지급기일에 구매기업이 제 1 호에서 약정한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협력기업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 2 호에서 정한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협력기업의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.</p> <p>5. 협력기업의 전자외담대 신청 또는 상생벤더구매론 신청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입금받은 채권대금을 그 지급기일에 별도의 수수료를 공제함이 없이 제 2 호의 방법으로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.</p> <p>6. 은행은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 없이 채권대금을 만기수령하기 위한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그 외상매출채권 처리에 관한 책임이 구매기업에게 있기로 하는 조건으로 제 2 호의 방법으로 지급대행업무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.</p>				<p>업무절차에 따른 문구 수정</p> <p>상동</p> <p>상동</p> <p>상동</p> <p>상동</p>
<p>⑨ (외상매출채권의 취소 및 변경) 구매기업이 제3항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 명세를 전산으로 통보한 경우,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하자, 전산조작오류, 기타 사유를 이유로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. 그러나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산통보를 받고 그에 기초하여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전자외담대 또는 상생벤더구매론을 실행한 후에는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, 통보당시의 외상매출채권 명세에 따른 금액을 제8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.</p>				<p>상동</p> <p>용어 수정</p>

⑩ (외상매출채권 지급채무의 범위)

제 3 항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 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외상매출채권금액 범위 내에서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전자외담대 또는 상생벤처구매론을 실행한 이후에는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의 채권자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의 **압류 또는 가압류의** 통지를 받거나, 협력기업으로부터 제 3 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거나, 세무서 또는 조세공과당국으로부터 체납처분 통지를 받는 등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외상매출채권의 **지급기일에** 은행에게 그 대금을 제 8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.

⑪ (기재생략)

제 5 조 (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, 총 대출한도 및 지급의무)

① (기재생략)

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	금 원						
협력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	금 원						
이자율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고정금리	<input type="checkbox"/>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연()%	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변동금리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준금리() + ()%					
	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준금리() + 기간별가산금리					
		1~1 5 일	16~4 5 일	46~7 5 일	76~10 5 일	106~ 195 일	196~ 285 일
	()%	()%	()%	()%	()%	()%	
지연배상금률	지연배상금률은 제 5 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합니다. 단, 최고지연배상금률은 연 %로 합니다.						
	연체가산율이 ()개월 이하인 경우 : 연 %						
	연체가산율이 ()개월 이하인 경우 : 연 %						

⑩ (외상매출채권 지급채무의 범위)

제 3 항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 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외상매출채권금액 범위 내에서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전자외담대 또는 상생벤처구매론을 실행한 이후에는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의 채권자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의 **(가)압류의** 통지를 받거나, 협력기업으로부터 제 3 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거나, 세무서 또는 조세공과당국으로부터 체납처분 통지를 받는 등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외상매출채권의 **만기일에** 은행에게 그 대금을 제 8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.

⑪ (현행과 같음)

제 5 조 (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, 총 대출한도 및 지급의무)

① (현행과 같음)

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	금 원	
협력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	금 원	
이자율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준금리() + 가산금리()%	
	<input type="checkbox"/>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연()%	
지연배상금률	지연배상금률은 제 5 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연체가산율 ()%를 더하여 결정하며, 최고 연()%로 합니다.	
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	1 년을 365 일(윤년은 366 일)로 보고 1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.	

용어 수정

용어 수정

이자율 적용 기준 반영

여신거래약정서 (기업용)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

	연체기간이 ()개월 초과인 경우 : 연 %	변 제 방 법	개별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.	용어수정
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	1 년을 365 일(윤년은 366 일)로 보고 1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.	※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지정계좌 입금분은 당일 중 변제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		
변 제 방 법	개별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.	② 구매기업은 제 1 항에 의해 대출 취급된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변제의무를 지며, 만기일에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변제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 1 항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및 방법으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		용어 수정
※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지정계좌 입금분은 당일 중 변제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
제 6 조 (협력기업의 대출신청 방법 및 대상) ①~② (기재생략) ③ 은행의 전산상의 사유로 해당일에 대출을 취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은행영업일에 대출취급하기로 합니다. ④ (기재생략)				
제 6 조 (협력기업의 대출신청 방법 및 대상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은행의 전산 상 장애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상태로 해당일에 대출을 취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은행영업일에 대출취급하기로 합니다. ④ (현행과 같음)				
제 7 조 (한도 감액, 정지) (기재생략)				
제 7 조 (한도 감액, 정지) (현행과 같음)				
제 8 조 (협약서 효력) ①~② (기재생략) ③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 의해 이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구매기업이 이 협약 제 4 조 제 3 항에 따라 통지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해당 채권의 결제일까지 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. ④ (기재생략)				
제 8 조 (협약서 효력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 의해 이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구매기업이 이 협약 제 4 조 제 3 항에 따라 통지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해당 채권의 실제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. ④ (현행과 같음)				
제 9 조 (관할법원의 합의) 이 협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본점·지역본부 또는 거래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				
제 9 조 (관할법원의 합의) 이 협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				

문구 수정

법무법인 검토
의견 반영한 문
구 수정

문구 수정

